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. 12. 4 선고 2024가단85003 판결 [약정금(공사대금) 청구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

담당변호사 김상민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20.

판 결 선 고 2024. 12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3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심동영

별지